

#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12.27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(이하 ‘센터’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교내 취·창업 부문을 총괄하는 허브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27>

**제2조(역할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센터의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센터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대학생(청년)에 대한 진로지도,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에 원활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2.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와 고용노동부, 고양시 간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‘센터’ 사업을 수행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‘대학일자리센터 지원약정서’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4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

1. 고용노동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·협력
2. 재학생 및 졸업생 취·창업지원
3. 취업상담, 진로지도, 취업역량강화, 취업알선,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 청년층 취업지원
4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5조(조직)**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, 대외적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는 학생경력개발팀을 두며, 학생경력개발팀장은 부참사(사서부참사)이상으로 보한다.<개정 2019.12.27>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

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-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생경력개발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27>

**제7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국가(고용노동부)로부터의 지원금
2.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<개정 2019.12.27>
3. 한국항공대학교(교비)의 지원금

**제8조(지원금 관리 및 회계적용)**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원금 관리 및 회계업무는 고용노동부 ‘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’ 및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**제9조 (준용)** 이 규정과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